



BOARD OF INVESTMENT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투자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Your Business. Our People.  
*INVEST* **Philippines**



### 1. 필리핀내 사무소 설립시 취할 수 있는 형태는?

필리핀내 사무소 형태는 단독보유기업(개인기업), 파트너십,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지역본부, 지역영업본부 등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음.

### 2. 외국인이 100% 지분 갖고 사무소 설립가능한가?

외국인투자법(FIA) 외국인투자제한분야(FINL)에 언급된 분야 제외한 분야 투자시 외국인이 100% 지분 소유 가능.

### 3. 외국인투자법(FIA)에서 규정하는 투자분야는 어떤것인가?

외국인투자법(FIA)은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의해 규제받는 은행,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산업 규정

외국인투자제한분야리스트(FINL)는 외국인지분이 40% 이하(0~40%) 이하로 제한받는 분야 리스트 의미, 이때 지분의 40%는 법인의 경우 outstanding capital stock, 파트너십 경우 자본 비율에 따라 결정

하기 사항이 Negative List A&B 구성:

**List A:** 헌법 또는 특별법에 의거 필리핀기업에 의해 수행되도록 규정된 업종 예시:

- A. 매스미디어(녹음/녹화업 제외), 전문직, 소매업, 소형광산 개발업 등: 외국인지분 보유 금지
- B. 광고, 토지소유, 공공인프라 운영관리 등: 외국인 지분 40%이하로 제한

**List B:** 국가 안보 관련분야, 공중보건 도덕에 악영향 끼칠 수 있는 업종, 자본금 20만불 이상의 내수기업. 단 과학기술부(DOST)에 의해 하이테크 기술로 인정받거나 50명 이상 직접 고용시 자본금 요건 10만불 이하로 감액 (즉 내수기업 경우도, 별도의 제한 없는한, 자본금 10/20만불 이상시 외국인 100% 지분 소유 가능)

### 4. 어떤 경우에 외국인이 내수 위주 기업의 지분을 100% 보유 가능한가?

- a. 하고자하는 사업영역이 FINL(외국인투자제한분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b. 내수 위주 기업의 자본금 20만불 이상시 단 아래 두가지 경우 최소자본금 요건 10만불로 감액
  - i. 하이테크 도입 기업 또는

- ii. 직접고용 50명 이상시
- c. 생산제품/서비스가 수출용인 수출 위주 기업

## 5. 투자신고(등록)은 어디에 해야 하는가?

- a. 개인/단독기업 경우: DTI (통상산업부) 웹사이트에 사업자명 등록 가능(<http://www.bnrs.dti.gov.ph>) 사업자명 관련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 (사업자명, 분류, 요건관련 문의처): (632) 751-3330
- (웹페이지 조회 불량, 표 디스플레이 등 기술적 결함 문의처): (632) 729-8681
- 신청후 진행단계 확인 문의처:

Metro Manila Numbers:

Trafalgar Building:	(632) 811-83 67 or (632) 811-8231
Hi-way 54:	(632) 706-1767
Park and Ride: (near Manila City Hall)	(632) 536-7153
Calocan City:	(632) 332-0829

- Or email us at [bnrshelpdesk@dti.gov.ph](mailto:bnrshelpdesk@dti.gov.ph) (또는 좌측 이메일로 연락 가능)
- 아래 주소로 방문 확인 가능
  - DTI-National Capital Region, Makati City if within Metro Manila; or  
12F Trafalgar Plaza, 105 H.V. Dela Costa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 메트로마닐라 이외 지역은 DTI-통상산업부 지역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 a. 법인/파트너십, 지사, 연락사무소 경우: 필요서류와 신청서를 SEC에 제출

Where to file application(서류 접수처):

1.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Building  
EDSA near cor. Ortigas Avenue, Greenhills  
Mandaluyong City  
Tel: (632) 584-0923  
if within Metro Manila;  
<http://www.sec.gov.ph>

2. SEC Extension Offices if outside Metro Manila

- b. 지역본부/지역영업본부 경우 필요서류와 신청서를 BOI(투자청)에 제출

Where to file application(서류 접수처):

Board of Investments  
Project Evaluation and Registration Dept.  
Industry and Investments Building  
385 Sen. Gil Puyat Avenue  
Makati City Metro Manila  
Tel. : (632)895-3997  
E-mail: [perd@boi.gov.ph](mailto:perd@boi.gov.ph)

## 6. 세제혜택 받기 위해 기업이 갖춰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필리핀내 설립된 법인/사무소가 투자인센티브 받기 위해서는 아래 투자유치 기관에 등록해야 함.

- a. Location outside of Economic or Freeport Zones (경제자유구역 외곽 소재시)
  - Board of Investments (BOI)-투자청
- b. Located in Economic or Freeport Zones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내 소재시)
  -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CEZA) – 카가안경제자유구역청
  - Clark Development Authority (CDC) – 클락개발공사
  - Phividec Industrial Authority (PIA) – 피비덱산업특구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 경제자유구역청
  -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SBMA) – 수빅만관리청
  - Zamboanga Economic Zone Authority (ZEZA) – 잠보앙가 경제특구

## 7. BOI(투자청), PEZA(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떤 기관인가?

### **Board of Investments (BOI)-투자청**

BOI(투자청)에 등록, 투자인센티브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이 BOI가 매년 업데이트 발표하는 IPP(투자유치우선분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동 리스트에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BOI 인센티브 수혜 대상이 됨.

- 생산 제품/서비스의 50% 이상 수출시 (외국인 지분 40% 이하의 필리핀기업 경우)
- 생산 제품/서비스의 70% 이상 수출시 (외국인 지분 40% 초과한 외국기업 경우)

Outstanding Capital Stock 기준, 외국인 지분 40% 넘어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내수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가 IPP(투자유치우선분야), Pioneer 프로젝트로 간주되는 경우 BOI 등록 통한 투자인센티브 수혜 가능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경제자유구역청**

1995 수정경제자유구역법(The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as amended)에 의거 PEZA는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의 운영, 관리, 개발 업무를 수행.

PEZA 등록 통한 인센티브 수혜 위해서는 생산 제품/서비스 전량(100%)을 수출해야 함. 수출비중이 70%~100%로 100%에 미달하는 경우 PEZA의 별도 승인 필요. 필리핀 전역에는 98개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가동중

## 8. 파이오니어 프로젝트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은?

해당 프로젝트가 아래의 우선투자유치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Pioneer 지위를 획득, 보다 높은 정도의 투자인센티브 수혜 가능, 해당 프로젝트가:

1. 필리핀에서 판매용(상업적 목적)으로 과거 생산된적 없는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단 포장, 조립 등 단순 가공은 제외)
2. 이제껏 시도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 방식, 공정, 생산시스템을 통해 변형, 제품이 생산된 경우
3. 필리핀 식량자족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농업 프로젝트/서비스 관련시
4. 대체 연료 생산 또는 대체연료 개발, 사용에 필요한 장비 제조시
5. 기타 IPP(투자유치우선분야리스트)에 명시된 경우

## 9. 등록기업에 대해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는 무엇인가?

### **Board of Investments (BOI) 등록시 인센티브**

종합투자법 1987 (1987 Omnibus Investments Code -Executive Order No. 226)에 의거 BOI에 등록시, 일정조건 충족시 아래 투자인센티브 수혜 가능:

#### 금전적 인센티브

A) 소득세 면제(Income Tax Holiday; ITH)

BOI 등록기업은 상업가동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소득세(30%) 납부 면제:

- pioneer status 보유한 신규 프로젝트: 6년간
- non-pioneer status의 신규 프로젝트: 4년
- 확장(Expansion) 프로젝트 3년, 일반적으로 확장프로젝트 소득세 면제는 확장에 따른 소득/매출 증가분에 대해서만 적용;
- 저개발지역(less developed areas; LDAs)내 신규 또는 확장 프로젝트 6년
- 현대화 프로젝트 3년, 일반적으로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역시 현대화에 따른 소득/매출 증가분에 대해서만 적용

B) 원자재, 부분품, 반제품 구입시 Tax credit 부여

C) 인건비에 대한 추가 공제 인정 (단 소득세 면제 인센티브와 동시 수혜는 불가)

D) 필수/불가피한 인프라 건설비용 추가공제 인정 (단 소득세 면제 인센티브와 동시 수혜 불가)

E) 항만세(wharfage), 수출세, 관세 및 각종 수수료 면제

F) E.O. No. 528 에 의거 자본재 수입시 개정된 수입관세 적용

2006.6.17일 이후, EO226에 의거 BOI에 신규 또는 확장 프로젝트로 등록한 기업이 기계, 장비, 부품류(spare parts), 부분품-액세서리 수입시 수출 위주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내수 위주기업에 대해서는 AHTN Chapter 40, 59, 68, 69, 70, 73, 76, 82, 83, 84, 85, 87, 89, 90, 91, 96에 해당되는 제품 수입시 1% 관세부과

EO 313에 의한 동 자본재 수입시 관세 면제 인센티브는 2006.16일 발효후 5년간만 유효(즉 2011.6월 부터는 동혜택 미적용, 2011.12월 현재 연장 추진중이나 미정 상태)

## 비금전적 인센티브

BOI 등록기업에게는 상기 금전적 인센티브 외 외국인 고용 허용, 투자/수익금의 자유로운 모국 송금 보장, 장비 수입시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 수혜 가능(importation of consigned equipment for an unlimited period subject to the posting of re-export bond)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경제자유구역청) 등록시 인센티브**

#### 경제자유구역 개발/운영 투자시 인센티브

- A) 소득세 면제(Income Tax Holiday)
  - 메트로마닐라 외곽에 소재한 IT Parks/Buildings; 4년
  - 저개발지역(less developed area)에 위치한 제조단지: 6년
- B) BOT (Build-Operate-Transfer)법에 규정된 인센티브, ODA(공적개발원조) 자금 활용 등 정부차원의 파이낸싱 지원
- C) 필수 off-site 인프라 facilities 제공
- D) 희망하는 경우 각종 국세/지방세 납부 대신 총수익(Gross Income)의 5% 세금 납부 가능
- E) 외국투자가 및 가족에 대해 영구 거주지위 인정
- F) 외국인 고용 허용
- G) 국내/외국투자기업 대상 경제자유구역 입주 홍보 지원

####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IT 기업

- A) 소득세 면제 (ITH)
  - 신규 등록 pioneer기업: 상업가동후 6년간
  - 신규 등록 non-pioneer 기업: 상업가동후 4년
  - 확장기업: 확장 프로젝트 상업가동후 3년
  - ITH 기간 종료시, 희망기업은 각종 국세/지방세 납부 대신 총수익(Gross Income)의 5% 세금 납부 가능
- B) 자본재, 부분품(Spare parts), 원료, 부품 수입시 관세 및 세금 면제;
- C) Domestic Breeding Stock and Genetic Materials에 대한 Tax Credit 부여-경제자유구역내 수출기업으로 필리핀 국내생산업자로부터 breeding stocks and genetic materials 구매시, 내국소비세 및 관련 수입관세 100%에 대해 Tax Credit 부여
- D) 전체 매출의 30% 한도내에서 국내 판매 허용
- E) 항만세(wharfage), 수출세 및 관련 수수료 면제
- F) 외국인 고용 허용
- G)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 H) 기타 종합투자법 (Executive Order 226-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에 언급, PEZA 이사회가 정하는 인센티브

## 기타 투자인센티브 프로그램

수빅자유구역(SBF)내 영업이 허가된 기업은, 자사소득의 내국 발생분 비중이 30%를 넘지 않는 한 각종 세금 대신 총소득(gorss income)의 5% 세금 납부 가능

클락경제특구(과거 미공군기지 소재지) 및 Poro 경제자유구역 (과거 Wallace Air Station 소재 지 및 인근지) 소재 기업도 SBF내 소재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 수혜

이외 2개 특별법에 의거 2개의 경제자유구역 형성, Cagayan 경제특구(CEZA)와 Zamboanga 경제특구(ZEZA)가 그것이며, 이들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PEZA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 수혜

## 10. 지역본부(RHQ) / 지역운영본부(ROHQ)가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은 무엇인가?

### Regional Headquarters (RHQ)- 지역본부

지역본부(RHQ) 활동은 지역내 지사, 사무소들에 대한 관리감독, 커뮤니케이션 및 조정역할에 한정됨.

필리핀내 어떠한 수익창출 행위나 필리핀내 지사, 사무소에 대한 관리 행위, 본사나 타 지사, 계열사를 대신한 제품/서비스의 판촉/마케팅 행위는 금지됨.

#### 지역본부 (RHQ) 설립시 인센티브

1. 소득세(income tax) 면제
2. 지점송금세(branch profits remittance tax) 면제
3.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면제
4. 지역본부에 대한 제품, 부동산, 서비스의 판매/임차시 영세율 적용
5. 토지/장비에 대한 재산세의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 수수료 면제
6. 지역본부 고유 기능 수행위한 훈련, 회의 등에 사용되는 장비, 자재의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단, 해당 장비, 자재가 필리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음을 BOI에서 확인받아야 함)
7. 회사명의 신차 수입 가능, 단 관련 세금은 납부해야 함.

### 지역운영본부 (ROHQ)

지역영업본부가 수행가능한 업무영역은 아래와 같음.:

- a. 일반관리, 기획
- b. 사업계획 및 조정
- c. 원자재/부품품의 조달/구매
- d. 재정/재무 자문
- e. 마케팅 컨트롤 및 판촉 활동

- f. 훈련, 인사관리
- g. 물류
- h. R&D, 제품/서비스 개발
- i.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 j. 정보처리 및 커뮤니케이션
- k. 사업개발

지역운영본부 (ROHQ) 설립시 인센티브

1. 10% 법인세(income tax rate) 부과
2. 지역본부에 대한 제품, 부동산, 서비스의 판매/임차시 영세율 적용
3. 토지/장비에 대한 재산세의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 수수료 면제
4. 지역본부 고유 기능 수행위한 훈련, 회의 등에 사용되는 장비, 자재의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단, 해당 장비, 자재가 필리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음을 BOI에서 확인받아야 함)
5. 회사명의 신차 수입 가능, 단 관련 세금은 납부해야 함.

지역영업본부(ROHQ)는 설립시 SEC에 신고된 서비스만 역내 사무소, 지사 등에 제공 가능. 직간접적으로 모기업, 지사, 계열사를 대리하여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판촉활동 할 수 없음

**11. 지역본부/지역운영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 a. 복수 비자 발급:
  - 근로자, 배우자 및 미혼의 21세 이하 자녀 대상 발급
  - 이민국에 관련 서류 제출후 72시간내 Non-immigrant visa 발급
  - 3년간 유효, 이후 추가 3년 연장 가능
  - 행정 실비 제외한 불필요한 수수료 면제
  - 외국인등록증(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면제
- b. 외국인 및 필리핀 간부직원(관리/기술직)에 대해 15% 원천징수세 적용
- c. 가정/개인용품수입시 관세 등 세금 면제;
- d. 여행세 면제 (부양가족 포함)

**12. 이익금/영업등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업이익/배당 또는 자본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금 유입시 SEC 또는 BTRCP 등록후 중앙은행(BSP)에 등록해야 함. 이를 통해 BSP 는 외국인투자등록에 간여

**13. 필리핀 태생의 필리핀인(Filipino)이 갖는 투자관련 권리는 무엇인가?**



외국인투자법(FIA)는 필리핀 태생의 필리핀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이들은 조합, 상업은행, 민간개발은행, 지방은행, 금융기관 등과 같은 활동에서 필리핀 국적자와 동일한 투자관련 권한 보유, RA8179에 의해 수정된 외국인투자법(FIA) Section1에 따르면 '국적을 상실한 필리핀 태생의 필리핀인이 법적 요건을 갖춘 토지 거래 등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 행사 가능. 즉 도시지역의 경우 5,000s/m, 지방에서는 3ha 한도내에서 토지 소유 가능

#### 14. 외국인투자에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필리핀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와 기업은 헌법에 의거, 아래의 기본적 권리와 보장 받을 수 있음.

##### 투자금 송금 권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최초 투자된 자금 일체의 외화 환전 및 본국 송금보장

##### 이익금 송금 권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투자 통한 이익금 발생시 자유로운 외화 환전 및 본국 송금 보장

##### 외국으로부터 차관 도입/계약 권한

외국차관에 따른 원리금상환 위한 자유로운 외화 환전 및 송금 보장, 또는 각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송금 보장

##### 수용에서 배제될 권리

공적 사용 또는 국가복리, 국가안보의 어떤 목적에서도 투자자의 자산은 정부에 의해 수용될 수 없음. 만약 전자의 이유로 수용이 이뤄진다면 투자자는 관련 보상비를 자유롭게 환전, 본국 송금 가능.

##### 국가 필수품 징발에서 제외될 권리

전쟁, 국가비상 사태 등이 아닌한 국가 필수품에 포함되어 징발되는 사태 없음. 만약 전자의 사태 발생시 투자자는 관련 보상비를 자유롭게 환전, 본국 송금 가능

#### 15. 투자자에게 부여되는비자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투자 거주비자(SIRV) 소유자는 해당 투자건이 존재하는한 필리핀내 영구 거주 가능. Foreign Service Code 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한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투자거주비자(SIRV) 신청 가능

- 비도덕적 범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함.
- 위험, 전염성의 질병에 간염되지 않아야 함.
- 정신병력이 없어야 함
- 필리핀내 최소 US\$75,000.00 이상 투자시

## 신청대상 투자유형

SIRV 신청 위한 ownership 인정 요건은 아래와 같음:

a. 기존 기업:

1. 공개상장기업
2. Investment Priorities Plan (IPP) 에 언급된 사업 추진 기업 또는
3. 제조/서비스 업종에 연관된 기업

b. 신규기업

4. 제조/서비스업종에 관련된 기업 또는
5. IPP에 언급된 사업 추진 기업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 위해 아래와 같이 비자유건을 완화

1. 외국인 주주, 투자가, 투자사 대리인, 토지개발자, 특정 분야의 관광레저 개발자로 특정국가 국민인 경우 특별비자인센티브 수혜 가능
2. 호혜 조약 체결 국가 국민 입국시 non-immigrants 지위 인정. 이들에게는 treaty-trader visas 부여. 동 비자는 양국간 특정 비즈니스 수행 목적에만 적용
3. 외국인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된 고용 비자 발급. 단 동 비자는 해당인력 기술이 필리핀내에서 소싱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입국비자

비즈니스, 관광, 의료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시입국비자(temporary visitor's visa) 발급. 동 비자 취득시 59일간 체류 가능. 최대 1년 한도내에서 연장 가능. 체류 연장 위해서는 이민국이나 마닐라 외곽 지역에서는 관련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함. EO408은 특별히 예외적인 국가 국민을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 대해 21일 한도내에서 무비자 체류 허용하고 있음.

## 노동허가서

일반적으로, 필리핀내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노동허가증(an Alien Employment Permit: AEP)을 취득해야 함. AEP는 1년간 유효하고 고용노동부 승인하에 연장 가능 지역본부 중역간부, treaty trader visa 소지자는 AEP 취득 의무 면제됨.

외국인을 고용코자 하는 국내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득해야 하며, 해당 기업은 해당 기술인력 소유자를 필리핀에서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함.

## 은퇴비자

은퇴비자는 필리핀 은퇴청(PRA)이 관할, 은퇴청의 주요 역할은 은퇴비자 발급 및 은퇴촌 홍보, 은퇴자에 대한 관련 서비스 제공임.

### Benefits (은퇴비자 취득시 혜택)

은퇴비자(SRRV) 보유자가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1. 은퇴자로서 영구거주 가능
  - 필리핀에서 거주, 근로, 수학 가능
2. 복수출입국 비장
  - 언제든지 필리핀에서 출입국 가능
3. 아래사항 면제:
  - 연금수혜 기간중 소득세
  - 이민국 출입국 허가
  - 이민국 매년 등록 요건
  - US\$7,000.00 한도내에서 개인/가정 용품 수입시 관세 면제
  - 최근 입국후 필리핀 체류 기간 1년 미만시 여행세
  - I-Card

추가 세부 정보 입수가 가능 은퇴청 웹사이트; [www.pra.gov.ph](http://www.pra.gov.ph)

### Treaty Traders Visa (applicable only to Japanese, Germans and Americans) 상호조약 가입국 관련 비자(일본, 독일, 미국 국민에게 적용)

동 비자는 아래 외국인에게 발급:

1. 필리핀내 기업 설립 추진, 운영 외국인
2.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요건 제한사항 회피 목적으로 non-immigrant 비자 신청하지 않아야 함.
3. 계약 완료시 필리핀 출국 예정자
4. 페이퍼 컴퍼니 아닌 실제 기업에 고용된 자

신청자가 미국국적자인 경우 아래사항 증명해야 함.

1. 필리핀-미국간 trade and commerce agreements 에 의해 규정된 trade에 종사
2. 계약 완료시 필리핀 출국 예정인자
3. 고용주가 외국인이고 고용기업이 외국기업이며, 신청자는 감독, 중역간부여야 함.
4. 규정된 나이보다 어린 경우, 신청자는 관리, 중역직 중빙 자격증 등 보유해야 함.

주: The Treaty Trader's Visa 는 1년간 유효.

## 필리핀투자청에서 종합 투자 관리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 지식기반시장 정보 제공
  - 사업타당성 분석
  - 투자관련 각종상담
- 투자관련 서비스 체인(service chain) 연결
  - 국내 및 해외 사업자 연결
  - 사업 확장 및 다양한 분야 상담
  - 산업분야 정보수집

